지식경제부	보도자료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2013년 3월 19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자료문의 : 제품안전조사과 장금영 과장(509-7250), 김석무 사무관(7253)		

기술표준원, 리콜 이행점검 관리강화
- 안전성조사부터 리콜 이행점검까지 제품안전 전주기 관리강화 -

□ 기술표준원(원장 : 서광현)은 소비자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리콜제품의 철저하고 신속한 회수를 위해 2013년에 리콜조치된 제품부터 강화된 리콜 이행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힘

○ 이는 제품안전기본법 시행('11.2.5) 이후, 2년간 리콜조치를 실시해 본 결과, 안전성조사 - 리콜처분 - 리콜 이행점검의 제반 과정에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

□ 기술표준원은 리콜 처분된 기업이 리콜조치 후 10일 이내에 계획 보고서, 2개월 이내에 리콜이행을 완료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여

○ 기업의 결과보고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철저한 리콜 이행점검 및 사후조치를 통해 기업의 리콜이행 전주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임

□ 이를 위해, 정부(기술표준원), 협회(한국제품안전협회), 소비자감시단(제품안전모니터링단*) 등 민관이 합동으로 리콜이행점검단으로 활동함으로써 전방위적인 리콜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임

* 제품안전모니터링단 : 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 안전모니터링단(150명)을 구성하여 분야별 유통제품에 대해 시장감시

○ 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조사과장을 리콜이행점검반장으로 하여, 안전성조사·리콜조치·이행점검 등 제품안전관리 全과정을 조사대상 품목별로 패키지 관리하는 담당자 전담제(공산품, 전기용품)를 도입하고

○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온라인상의 리콜제품 단속과 리콜 미이행기업 고발조치 등을 실시하며

○ 소비자감시단은 소매점, 재래시장, 문방구 등 위해상품차단시스템*이 가동되지 않는 곳을 중점 단속할 계획임

* 위해상품차단시스템 : 기술표준원, 식약청 등에서 제공하는 위해상품정보를 코리안넷(대한상공회의소 운영)에서 종합하여 실시간으로 유통사에 전송. 유통매장 계산대(POS)에서 바코드 스캔시 해당 상품의 판매를 차단

□ 리콜조치 이행점검 강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「리콜이행점검 업무처리지침」을 마련하여 리콜조치 이행점검 프로세스를 매뉴얼화하여 시행하고

○ 계량화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리콜 이행점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고, 이행점검 대상기업은 리콜제품 회수율*1) 및 공표방법*2) 등 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스스로 제출토록 하는 것임

*1) ①공표시 실시한 신문, 홈페이지, 유통매장 공문발송 등의 근거 자료, ②리콜제품 생산량회수량 등을 기록한 반출입 원장, 수출입실적증명서 등 리콜 회수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, ③기타 증빙에 필요한 동영상, 사진 등

*2) ①신문 등 언론 공표, ②자사 홈페이지 게재, ③판매(유통)업체에 리콜안내 및 협조요청 발송, ④소비자에 전화나 문자발송으로 통보 등 적극적인 공표 실시

○ 이행점검 평가결과, 일정 평가점수 이하는 리콜조치 불이행 기업으로 판정하고,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리콜명령 불이행 기업은 형사고발조치, 리콜권고 불이행 기업은 리콜명령 및 공표 조치하는 등 철저하고 단호하게 사후관리할 예정임

□ 한편, 기술표준원은 리콜이행 평가시 리콜제품 회수노력 등 모범적인 리콜이행 우수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표창하고 우수사례로 홍보할 예정임

* 표창대상 기업요건 : ⅰ)안전기준 위반행위가 의도적이지 않은 경우, ⅱ)리콜 이행평가 결과 공표방법 및 회수율에서 일정 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, ⅲ)리콜 이행점검시 온-오프라인 시장에서 유통되는 리콜제품으로 적발된 사례가 없는 경우 등

□ 향후 기술표준원은 同 「리콜 이행점검 관리강화계획」을 제품안전 포털사이트(www.safetykorea.kr)에 상당기간 게재하여 관련 기업 등의 차질없는 리콜이행을 유도할 계획임